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182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18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002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피고, 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현철

변론 종결2022. 11. 2.

판결 선고2022. 12. 14.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002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①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③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65,276,0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나. 제1예비적으로, ① 피고와 소외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③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65,276,0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다. 제2예비적으로, ① 피고와 소외 F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③ 피고는 소외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65,276,0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과 제12면 각주 3) 제2행의 각 "327,527,930원"을 "327,527,390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 다음에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 C를 상대로 제2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중단 없이 진행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21행부터 제19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 을 제2, 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2016. 12. 15. 또는 2018. 5. 30. 제2 손해배상채권과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2. 3. 11.을 기준으로 원고가 제2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① C가 2016. 12. 15. 제1 선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8. 3.과 2015. 9. 9. 허위거래 외에도 8억 내지 9억 가량의 허위거래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와 물품대금 25억 원 상당의 파이프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일자와 물품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C의 증언만으로는 위 25억 원의 거래 중 허위거래를 특정할 수 없어 원고가 C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한편 피고가 2018. 4.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 30. 부터 2015. 7. 17.까지 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분이 2018. 5.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위 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 받은 적이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오랜 거래 동안 대부분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왔던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됨이 없이(위 소송의 소장에 첨부된 증거로는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 결제실적 증명서, D의 세금계산서

수정요청 내용 증명, 관련 사건의 검색내용만이 제출되었다) 단순히 위와 같은 소장이 송달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소제기 이후 계속하여 위 기간 동안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주장을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30. 무렵 위 거래와 관련하여 C에 대한 제2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그 밖에 피고와 D 사이의 소송과 D가 C를 고소한 사건은 모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원고로서는 위 소송 등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송과 고소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C에 대한 제2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는 2018. 11. 27. 제2 선행소송 진행 중 피고로부터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문 즉, 'D와 C 사이의 위 기간 사이 계약관계가 불성립되었다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문'을 제공받은 적이 있어, 이에 의하면 자신의 선행 거래인 D와 C 사이의 채권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C에 대한 제2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므로, 관련 소송의 제2심이 선고된 2020. 1. 9. 또는 원고가 제2 선행소송에 '예비적으로 C에 대한 제2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2020. 2.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까지 원고에게 C에 대한 제2 손해배상채권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2022. 1. 28. C를 상대로 제2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전1861)을 함으로써,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22. 3. 11. 이전에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제2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형배

판사김제욱

판사박영주

별지